

| | | |
|----------|------|---|
| 의안 번호 | 1673 | 【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 |
|----------|------|---|

1. 검토 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11. 6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11. 6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12. 8.(화)

2. 제정 이유

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큰애기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활성화와 캐릭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

3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시책과 사업(안 제3조)
- 다. 상표의 관리 및 홍보, 사용신청 및 승인, 사용료, 사용계약, 승인 취소 및 사후관리(안 제4조 ~ 안 제8조)
- 라. 상품 제작 및 판매, 특별할인판매(안 제9조 ~ 안 제10조)
- 마. 홍보 지원(안 제11조)
- 바. 홍보단의 구성(안 제12조)

4. 근거 법규

- 가.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제4항
- 나. 「상표법」 제97조(통상사용권), 제109조(손해배상의 청구)
- 다. 「상표법 시행규칙」 제28조(상표등록출원)

5. 검토 의견

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「관광진흥법」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중구의 관광진흥과 문화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큰 거 법 규

관광진흥법

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6. 2. 3.>
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5.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
상표법

제97조(통상사용권)

-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.
-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(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)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.
- ④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(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)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.

- ⑤ 통상사용권의 공유 및 설정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제2항 및 제95조 제2항·제4항을 준용한다.

제109조(손해배상의 청구)

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상표법 시행규칙

제28조(상표등록출원)

- ① 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”란 별표 1에 따른 상품류를 말한다.